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761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4. 9. 8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5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근규

별지